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목 차>

- 1.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 2.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 3.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
- 4.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부 질권대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김경문
소관부처 및	담당부서 (과)	금융정책과	작 성	직급	5급
작성자 인적사항	국장	권대영	자	연락처	02-2100-2824
	과장	변제호		이메일	2081070@mail.go. kr

2022. 06. 2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기본	2.규제조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3 제3-3호					
정보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					
	4.유형	신설	신설 5.입법예고 2022.06.21 ~ 2022.06.30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20.11.13일, '21.4.29일, '21.10.26일) □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추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지원은 제한하여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할 필요					
규제의 필요성	7.규제내용	□ 차주단위DSR ○ 차주 단위 DSR(은: 누적 1억원 초과 가계대 ○ 주택 또는 비주택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 이 주택 또는 비주택 대제지역의 시가 6억원 최 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용 ○ 주택 또는 비주택 대적 2억원 초과 가계대 DSR 적용 □ 비주택담보대출 ○ 비주택당보대출 ○ 비주택당보대출 ○ 비주택당보대출 ○ 비주택당보대출 □ 신용대출을 40% 이 대로 적용경우 LTV비율을 40% 이 대로 적용경우 인용대출	출을 보유한 가계 차매매계약금납부일이 배출을 보유한 연소를 SR 적용 개매계약금납부일이 참 주택을 담보로 한보유한 가계 차주에 개매계약금납부일이 참을 보유한 가계 하고, 토지거래허가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	· 주로 확대 '20.11.30일 ~ 등 8천만원 초 21.7.1일 ~ '22 한 대출이 있 대해 차주 단 22.1.3일 ~ '22 차주에 대해 담대를 받는	-'21.6.30일인 E과 가계 차 .6.30일인 규 거나 누적 1 단위 DSR 적 .6.30일인 누 차주 단위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신규 신용대출 취급제한 □ 대부업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독규정 적용 				
	8 .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주 ¹ 가겨 금융 피규제자 담토 ^축	출 등 가계대출을 유 형 택관련 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고자 하음 용소비자 및 주택관련 보대출 등 가계대출음 대출 등 가계대출음	취급하는 금 - - - - - 일반국 ¹ 을	금융회 민원수 민 및	사 또는 규모 금융회사 임직원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부문멸한 가계내 환능력 범위 내 기				선제적 관리 및 상
			비용	편 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10.비 용 편익분석	정성분석				
규제의 적정성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11.영 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7	l 경쟁영향	향평가	중	기영향평가
	1 2 . 일 몰 설 정 여부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혅 행 개 정 아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 1.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가. (생략)

- (1) (생략)
- (2) 재건축・재개발(리모 델링 포함, 이하 이 규 정 별표 3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 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 출

나. ~ 다. (생 략) <신 설>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가.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재건축・재개발(리모 델링 및 도심 공공주 택 복합사업 등에 따 라 현물보상으로 공급 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3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 주비대출. 추가분담금 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동산 중 다목의 주택을 제외한 것 을 말하며, 그 분양권 및 재건 축 · 재개발 지분 등을 포함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다. 마. "비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 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비주택 부동산 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리모 델링 포함, 이하 이 규
<u>라. (생 략)</u> <신 설>	정 별표 3에서 같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 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박. (현행 라목과 같음) 사. "신용대출"이라 함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 원에서 집중・관리중인 개인 대출 중 신용대출(학자금대출 과 전세자금대출 제외)을 말 한다.
마. ~ 하. (생 략)	<u>아.</u> ~ 더. (현행 마목부터 하목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까지와 같음) 러. <u>"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u> 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 다.
<u>거. ~ 너. (생 략)</u>	<u>머. ~ 버. (현행 거목부터 너목</u> <u>까지와 같음)</u>
더. "서민·실수요자"라 함은 투	서. "서민·실수요자"라 함은 투
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원이하, ②주택가격 9억원 이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	<u>하</u> ,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
<u>하</u> ,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부부합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부부	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

러. ~ 터. (생 략)

합산 연소득 8천만원(생애최

초구입자 9천만원)이하, ②주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u>어.</u> ~ 노. (현행 러목부터 터목 까지와 같음)

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무

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

도.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택가격 5억원 이하, ③무주택 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
	익증권(라목에 따른 비주택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한함)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u>을 말한다.</u>
	로. "총대출액"이라 함은「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
	원에서 집중·관리중인 가계대
	출 금액의 합계(누적기준, 한
	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
	출 총액으로 간주)를 말한다.
	모.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이라
	함은 버목에 따른 세대 구성
	원 모두가 과거에 다목에 따
	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
	<u>는 자를 말한다.</u>
	보. <u>"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u>
	등"이라 함은 제3자가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대출 또는
	주택(또는 근저당권) 신탁을 통
	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등 제3자가 취급한 주택관
	런대출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개 정 아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의 적용)

가. ~ 나. (생 략)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삭 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 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구 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 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1) '19.12.22.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 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 실을 증명하였거나,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여 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 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소. "대부업자"라 함은 「대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대부업자를 말한다.

제2장 -----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차주

(2) '19.12.22.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입 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 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 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분양 주택, 재건축·재개 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 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세3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19.12.23.부터 전 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 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 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3) '20.3.1.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이미 납부한 사실 을 증명하였거나,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 등을 통해 대

개 혅 했 정 아

출 신청접수를 완료하 였거나, 여신전문금융회 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4) '20.3.1.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 가 없는 경우 착공신 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 금대출(분양 주택, 재 건축 · 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 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지위)이 '20.3.2. 부터 전매(전매기준일 은 동 법률에 따라 거 래당사자가 분양권 등 의 거래를 신고한 날) 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

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 다. 가목 내지 나목에서 정한 담 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 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 및 여신전문금융절사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
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 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 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 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수 있다.

라. 가목 내지 나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

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에 한한다.)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다.

-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 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 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 용할 수 있다.
 - (1)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 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 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가산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아

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 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다.

- 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목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목 내지 나목에서 정한 담보인 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목 내지 나목에서 정 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 용할 수 있다.
 - (1)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 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 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다음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 출금액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담보인정비율	가산힌
. —			도	
6억원	이하분	(조정대상지역	1200/2 0111	
3 H TF	의어판기			
6억원	초과분	(조정대상지역	.100/~ 011	
5억원	초과분)		+10%p 이대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현 행	개 정 안
	<u>담보인정비율을 80%</u>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
	<u>다. 다만, 이 경우 주택</u>
	<u>담보대출금액은 6억원</u>
	<u>을</u> 초과할 수 없다.
(2). ~ (3). (생 략)	(3). ~ (4). (현행 (2)~
	(3)과 같음)
3-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	3-1
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	
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
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임대사	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임대사
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	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
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	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
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	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
매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	매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
율은 다음과 같다.	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20.6.30.까지 주택매	<u><삭 제></u>
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현 행	개 정 안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
	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률」제3조제1항제3호
	<u>에 해당하는 지위)이 '</u>
	<u>20.7.1.부터 전매(전매</u>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
	라 거래당사자가 분양
	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u>날)된 경우는 제외한</u>
	<u>다.</u>
	(3) 기존에 취급한 주택
	<u></u> 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
	<u> </u>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u><삭 제></u>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다	
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9.12.22.까지 투기지	
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서 주택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	
였거나,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전산상 등록	

혀 행

개 정 안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2) '20.3.1.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이미 납부한 사실 을 증명하였거나,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 등을 통해 대 출 신청접수를 완료하 였거나,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라. (생략)

마.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 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 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 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 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라.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 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 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 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 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

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 해서는 가목 내지 다목 및 제 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나. (생 략)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삭 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다 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 인정비율을 <u>초과할 수 없다.</u>

> (1) '19.12.22.까지 투기지 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서 주택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 였거나,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부터 대출만기 연장통

개 정 아

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 해서는 가목 내지 나목 및 제 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 3-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 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보를 받은 차주

(2) '19.12.22.까지 투기지 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서 입주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 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 금대출(분양 주택, 재 건축 · 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 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u>등(「부동산</u>거래 신 고 등에 관한 법률_ 제3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지위)이 '19.12. 23.부터 전매(전매기 준일은 동 법률에 따 라 거래당사자가 분양 권 등의 거래를 신고 한 날)된 경우는 제외 한다.

(3) '20.3.1.까지 조정대상

현 행 개 정 안

지역에서 주택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이미 납부한 사실 을 증명하였거나,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 등을 통해 대 출 신청접수를 완료하 였거나,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20.3.1.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 가 없는 경우 착공신 고, 재건축·재개발 사 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 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 택, 재건축 · 재개발 주 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지위) 혀 행

개 정 안

이 '20.3.2.부터 전매 (전매기준일은 동 법 률에 따라 거래당사자 가 분양권 등의 거래 를 신고한 날)된 경우 는 제외한다.

라.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 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 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 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주택 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 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목, 나목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 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 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목, 나목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기업
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을 주
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
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3.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 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비주택

현 행	개 정 안
	담보대출(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
	정비율을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1.5.16.까지 비주택
	<u>부동산의</u>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
	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u>하였거나,</u> 여신전문금
	<u>융회사가 전산상 등록</u>
	<u>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u>
	수를 완료하였거나, 여
	<u>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u>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차주
	(2) '21.5.16.까지 분양 광
	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조합
	원의 경우 관리처분인

현 행	개 정 안
	가)를 실시한 사업장
	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
	출(단, 분양 광고 등이
	<u>있었던 사업장의 분양</u>
	권 등(전매기준일은
	<u>동</u> 법률에 따라 거래
	<u>당사자가 분양권 등의</u>
	거래를 신고한 날)이
	<u>'21.5.17일부터 전매된</u>
	<u>경우(전매기준일은 동</u>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
	자가 분양권 등의 거
	래를 신고한 날) 등에
	는 가목에 따른 담보
	인정비율 적용)을 받
	<u>는 차주</u>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토지거래허가구
	역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
	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u>4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u>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u>아니한다.</u>

현 행	개 정 안
	<u>(1) '21.6.30.까지 비주택</u>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
	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하였거나, 여신전문금
	<u>융</u> 회사가 전산상 등록
	<u>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u>
	<u>수를</u> 완료하였거나, 여
	<u>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u>
	<u>대출만기 연장통보를</u>
	<u>받은 차주 또는 그 밖</u>
	에 이에 준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차주
	(2) '21.6.30.까지 분양 광
	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주택
	<u>재건축·재개발 사업</u>
	장 조합원의 경우 관
	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대출과 잔
	금대출(단,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u>분양권 등</u> (전매기준일
	은 동 법률에 따라 거
	래당사자가 분양권 등

현 행	개 정 안
	의 거래를 신고한 날)
	<u>이 '21.6.30일부터 전매</u>
	<u>된 경우</u> (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u>등</u>
	에는 다목에 따른 담
	보인정비율 적용)을
	받는 차주
	(3) 차주가 토지거래허가
	<u>구역 지정 이전부터</u>
	보유 중인 비주택 부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축어업인인 경
	우. 이 경우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차주가 농
	축어업인임을 확인하
	<u> 여야 한다.</u>
	다. 비주택 부동산 구입 목적 이
	외의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
	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을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총부채상화비율(DTI)

- 4.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 상환비율의 적용)
 - 가. ~ 나. (생 략)
 -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 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 규제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 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를 가산할 수 있 다.

(2) (생략)

라. ~ 마. (생 략)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5. (고가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에 대한 총부채워리금상환비율 의 적용)
 - 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개 정 아

제3장 -----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 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및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 상환비율6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 (2) (현행과 같음)
 - 라. ~ 마. (현행과 같음) 제4장 -----
 - 5.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 용)
- 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가주 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대출 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

현 행	개 정 안
대해 대출(해당 고가주택 담	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보대출을 포함한다) 신규대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출 취급시 총부채원리금상환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u><신 설></u>	<u>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22.6.30</u>
	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
	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
	<u>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u>
	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
	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에는 다
	음 표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
	환비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계약금 납 부, 대출 신청접수, 적용대상 ¹⁾ 리금 대출만기 연장통보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 '20.11.30일 차주 60% 이 ~'21.6.30일 또는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 법을 보유한 연소득 8천만원 ²⁾ 초과 가계 차주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 는 가계차주 또는 신용대출 대출총액(누적기준, 한도대출 의 경우 한도 금액을 대출 총 액으로 간주)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가계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차주 '22.1.3일 - 신용대출 대출총액 50% 이 ~'22.6.30일 (누적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반도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차주 - 가계대출 총액이 누적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 차주
	주: 1) 누적 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 신청금액을 합산
	2) 신용대출 취급 시점의 연소<u></u>
<u><신 설></u>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2.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 고 등(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입주자모집 공고

현 행	개 정 안
	또는 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
	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
	금대출시 다음 표와 같이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
	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
	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
	이 '22.7.1일부터 전매(전매기
	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
	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
	<u>한다.</u>

현 행	개 정 안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 <mark>총부채원 리금 상환비율</mark>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 '20.11.30일 차주 60% 이 ~'21.6.30일 또는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 출을 보유한 연소득 8천만원 ²⁾ 초과 가계 차주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 는 가계차주 또는 신용대출 대출총액(누적기준, 한도대출 의 경우 한도 금액을 대출 총 액으로 간주)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가계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차주 - 신용대출 대출총액 50% 이 (누적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내한도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차주 - 가계대출 총액이 누적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 차주
	주: 1) 누적 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 신청금액을 합산 2) 신용대출 취급 시점의 연소 득 기준
<신 설>	라. '22.7.1일부터 신청·접수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함에 따라 가목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 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 채워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 워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바.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 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 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 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 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총부

개 정 아

할 수 있다.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 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 채워리금상화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1). ~ (3). (현행과 같 음)

> (4). 비주택 부동산의 분 양에 대한 중도금대 출, 재건축·재개발 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현행(4)와 같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 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 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 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 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현	행	
	채원리금성) 환비율을	초과하
	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u>라</u> .	다음 어느	- 하나에 히	배당하는

경우에는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신 설>

개 정 안

3에서 같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3).'22.1.2.까지 비주택부 동산의 분양 광고(분 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 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대출(분 양 주택, 재건축 • 재개 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 장의 분양권 등(「부 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1.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 및 유의사항

6.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대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취급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 기일)로부터 <u>다음 표에서 정</u> 하는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 자가 분양권 등의 거 래를 신고한 날)된 경 우는 제외한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6.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 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 출 취급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 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 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 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담보 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 기일)로부터 <u>2년</u>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

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전입(단, 해당 기간 이내 전 입이 곤란하여 여신전문금융 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 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 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 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 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 는 경우

매매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 고일(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 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인가일)	
'19.12.22일 이전	2년 이내 처분
'19.12.23일~'20.6.30일	1년 이내 처분 및 1년 이내 전입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처분 및 6 개월 이내 전입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 이

개 정 아

하는 것(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이내 기존 주 택의 처분이 곤란하여 여신 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 회로부터 처분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 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 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 되는 경우

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현 행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전입(단, 해당 기간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매매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 고일(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 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

'20.3.1일 이전	2년 이내 처분
'20.3.2일~'20.6.30일	2년 이내 처분 및 2년 이내 전입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처분 및 6 개월 이내 전입

다.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서,다음 (1), (2)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향후 3

개 정 안

(명의이전 완료)하는 것(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이내 기존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 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서,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

혀 행

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여신전문급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 불가피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 대출 실행일 기준(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

개 정 안

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 대출실행일 기준(중도금·이주비 대출인경우 신규 주택 준공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6개월마다 해당

현 행 개 정 안

내에신규주택으로전입하고, 이를 입증할<u>것</u>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입증할 것(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을경우 전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주택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규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유가 해 소된 경우(단,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신규 주택에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 출을 통해 구입한 신 규 주택 중 1채를 처 (2) 무주택자인 세대구성 원이 대출실행일(이주 비・중도금인 경우 신 규주택 준공 후 소유 권 이전 등기일 기준)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하고 개별 세대를 구 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을 여신전문금융회사 혀 행

에 입증할 것

아

정

<u>분하고</u>, 이를 입증할 <u>것</u>

라. ~ 마. (생 략)

7. (무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고 가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무주택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 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 가목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8. (무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고 가주택이 아닌 주택구입 목적 주 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무주택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입(단, 해당 기간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

라. ~ 마. (현행과 같음) <u><삭 제></u>

개

<u><</u>삭 제>

혅 햀 개 정 아

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 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 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대출 을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담보 인정비율을 적용한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 게 되는 경우 제외)

9.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7.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관 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 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구 입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10.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 초고가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관 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 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구 입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8.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 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1주택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생략)

- 나. 담보물건별 연간 1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경우에는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다. (생략)
- 11.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 급요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 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다. 다만, 이 경우 제3호 <u>가목 내</u> 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담보인정 비율을 적용한다.

가. (현행과 같음)

-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다. (현행과 같음)
- 9.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 급요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 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다. 다만, 이 경우 제3호 <u>가목 및</u> 나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혀 행

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여 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 지 않을 수 있다

가. (생략)

- 나. 담보물건별 연간 1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 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당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세대로 한정) 또는 여신전문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취급 가능
- 12.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0호 및 제11호에도 불구하고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 가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택관

개 정 안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여신 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당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세대로 한정) 또는 여신전문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취급 가능
- 9.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8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 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 적의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 수

현 행

런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 가. 가계대출로서 <u>연간 1억원</u> 신 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 13. (중도상환 제한)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 급할 수 있다.

- 가. 가계대출로서 <u>연간 2억원</u> 신 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 11. (중도상환 제한)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 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2. (고액 신용대출 취급제한) 여 신전문금융회사는 누적 1억원 (대출 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하 여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 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

현 행

개 정 안

<u>14.</u> ~ 15. (생 략)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가. ~ 라.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 (1). '19.12.22.까지 투기과 열지구에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을 이미 납부한 사 실을 증명하였거나, 여 신전문금융회사가 전 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

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 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 14. (현행 14호부터 15호까 지와 같음)

15.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하였거나, 여신전문금	. 5
융회사로부터 대출만	
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2). '20.3.1.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이미 납부한 사실	
을 증명하였거나,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전산	
<u>상</u> 등록 등을 통해 대	
출 신청접수를 완료하	
였거나,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17. ~ 18. (생 략)	16. ~ 17. (현행 17호부터 18호까
	지와 같음)
<신 설>	18.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
<u> </u>	부 질권대출 등 취급기준)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주
	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을 취
	급할 경우, 대부업자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이하 "원
	차주"라 한다)에게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해당 주택관련 대출을 직

현 행	개 정 안
	접 취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규
	정 별표 3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이 때 대출취급시점은 대부
	업자가 원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을 직접 취급한 시점으로 본다.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추진배경) 급등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발표
 - * '20.11.13일, '21.4.29일, '21.10.18일 :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 결정사항
 - 이에 따라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로 규정 변경이 필요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등
- □ (정부개입 필요성)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안정화시키고,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주요 규제 내용별 정부개입 필요성

- ① 가계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대상 확대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확장적 금융· 통화정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대두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대출 취급 관행 안착 노력 필요
- ②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LTV 규제 강화 :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담보종류별로 대출규제에 차등이 발생하여 규제사각지대·규제우회 문제 발생 →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 취급시 LTV 규제 도입 필요
- ③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 생활자금 수요 증가, 자산 시장 유입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규제 필요
- ④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감독: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대상 외 업권 (대부업자)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등 규제사각지대 발생 → 규제우회를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그제대아1	대안명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내용	
그제대아	대안명	
ㅠ세네건2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회사의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가계부채 안정화
- □ (규제수단) 저소득 차주 등의 가계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 일부 대출(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정책적 목적에 따른 대출, 자연재해 지원 대출 등)은 신규 취급시 DSR 적용을 제외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거시건전성 관리와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가 계부채 관리방안」('20.11.13일, '21.4.29일, '21.10.18일)의 후속조치로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당장은 일반 국민의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규제 대상 단계적 확대 등 다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약 (가계부채 안정 효과는 全 국민이 향유)
 -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사항 등을 마련 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사항 등을 마련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o 규제 차등화 방안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원칙적으로 DSR 50% 이내 규제 적용
 -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나 서민금융
 상품 등 금융감독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DSR
 규제 배제하여 탄력적 적용소지 마련
- □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추가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취급 허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 실질적인 대출행위는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바, 추가적인 행정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 에 불과한 바, 추가 예산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방안임
 - 방안 발표 후에도 금융당국-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례별 상세 FAQ 마련·배포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주요내용>

① '20년 11.13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관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 신용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② '21년 4.29방안

일 자	조치 내용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및 FAQ 배포 - 비주택담보대출 LTV 및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③ '21년 10.26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발표 및 FAQ 배포 - 가계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및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한도관리 강화		
11.1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 개최 및 가계부채 관련 후속조치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 금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과도한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 하여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 관행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 **비주택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 우회 경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여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기본	2.규제조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3 제5호			
정보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6.21 ~ 2022.06.30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20.11.13일, '21.4.29일, '21.10.26일) □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추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지원은 제한하여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할 필요			
규제의 필요성	7.규제내용	무적 1억원 초과 가계대 ○ 주택 또는 비주택 무적 1억원 초과 신용대주에 대해 차주 단위 D2 ○ 주택 또는 비주택 대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 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요 ○ 주택 또는 비주택 대적 2억원 초과 가계대 DSR 적용 □ 비주택담보대출 ○ 비주택당보대출	출을 보유한 가계 차매매계약금납부일이 배출을 보유한 연소들 SR 적용 배매계약금납부일이 '환과 주택을 담보로 한보유한 가계 차주에 배매계약금납부일이 '참을 보유한 가계	50%) 규제 적용 대상을 구로 확대 '20.11.30일~'21.6.30일인 등 8천만원 초과 가계 차 21.7.1일~'22.6.30일인 규 한 대출이 있거나 누적 1 대해 차주 단위 DSR 적 22.1.3일~'22.6.30일인 누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담대를 받는 경우 LTV비 구역 내 비주담대를 받는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실행일 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신 규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대부업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 주하여 감독규정 적용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소비자 및				
	8.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환능력 범위 내 기	나계대출 취급 관 형	성 정착 도도	<u> </u>	
			비용	편 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정성분석				
규제의 적정성		주요내용				
	11.영 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기	l 경쟁영 ³	향평가	중	기영향평가
	1 2 . 일 몰 설 정 여부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추진배경) 급등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발표
 - * '20.11.13일, '21.4.29일, '21.10.18일 :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 결정사항
 - 이에 따라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로 규정 변경이 필요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등
- □ (정부개입 필요성)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안정화시키고,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주요 규제 내용별 정부개입 필요성

- ① 가계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대상 확대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확장적 금융· 통화정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대두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대출 취급 관행 안착 노력 필요
- ②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LTV 규제 강화 :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담보종류별로 대출규제에 차등이 발생하여 규제사각지대·규제우회 문제 발생 →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 취급시 LTV 규제 도입 필요
- ③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 생활자금 수요 증가, 자산 시장 유입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규제 필요
- ④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감독: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대상 외 업권 (대부업자)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등 규제사각지대 발생 → 규제우회를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선정파시킨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표시되다	내용	
그레데이스	대안명	
규제대안2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회사의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가계부채 안정화
- □ (규제수단) 저소득 차주 등의 가계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 일부 대출(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정책적 목적에 따른 대출, 자연재해 지원 대출 등)은 신규 취급시 DSR 적용을 제외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거시건전성 관리와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가 계부채 관리방안」('20.11.13일, '21.4.29일, '21.10.18일)의 후속조치로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당장은 일반 국민의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규제 대상 단계적 확대 등 다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약 (가계부채 안정 효과는 全 국민이 향유)
 -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사항 등을 마련 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 사항 등을 마련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o 규제 차등화 방안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원칙적으로 DSR 50% 이내 규제 적용
 -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나 서민금융
 상품 등 금융감독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DSR
 규제 배제하여 탄력적 적용소지 마련
- □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추가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취급 허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 실질적인 대출행위는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바, 추가적인 행정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 에 불과한 바, 추가 예산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방안임
 - 방안 발표 후에도 금융당국-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례별 상세 FAQ 마련·배포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주요내용>

① '20년 11.13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관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 신용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② '21년 4.29방안

일 자	조치 내용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및 FAQ 배포 - 비주택담보대출 LTV 및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③ '21년 10.26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발표 및 FAQ 배포 - 가계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및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한도관리 강화			
11.1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 개최 및 가계부채 관련 후속조치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 금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과도한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 하여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 관행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 **비주택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 우회 경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여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				
기본	2.규제조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	정 별표3 제12호			
정보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6.21 ~ 2022.06.30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20.11.13° 21.4.29일, '21.10.26일) □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추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너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 들 수 있는 대출지원은 제한하여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할 필요				
규제의 필요성	7.규제내용	무적 1억원 초과 가계다 ○ 주택 또는 비주택 무적 1억원 초과 신용대 주에 대해 차주 단위 D ○ 주택 또는 비주택 의 제지역의 시가 6억원 최 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용 ○ 주택 또는 비주택 의 적 2억원 초과 가계대 DSR 적용	대매계약금납부일이 대출을 보유한 연소를 SR 적용 대매계약금납부일이 ' 로과 주택을 담보로 한 보유한 가계 차주에 대매계약금납부일이 ' 출을 보유한 가계	50%) 규제 적용 대상을 ት주로 확대 '20.11.30일~'21.6.30일인 등 8천만원 초과 가계 차 21.7.1일~'22.6.30일인 규 한 대출이 있거나 누적 1 대해 차주 단위 DSR 적 22.1.3일~'22.6.30일인 누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담대를 받는 경우 LTV비 구역 내 비주담대를 받는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실행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규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신규 신용대출 취제한 □ 대부업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주하여 감독규정 적용				
		주택관련 담보대를 주택관련 담보대를				
	8.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소비자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무분별한 가계대 환능력 범위 내 기				선제적 관리 및 상
			비용	편 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규제의 적정성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기	나 경쟁영향	향평가	중	·기영향평가
	12.일 몰 설 정 여부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추진배경) 급등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발표
 - * '20.11.13일, '21.4.29일, '21.10.18일 :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 결정사항
 - 이에 따라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로 규정 변경이 필요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등
- □ (정부개입 필요성)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안정화시키고,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주요 규제 내용별 정부개입 필요성

- ① 가계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대상 확대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확장적 금융· 통화정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대두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대출 취급 관행 안착 노력 필요
- ②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LTV 규제 강화 :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담보종류별로 대출규제에 차등이 발생하여 규제사각지대·규제우회 문제 발생 →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 취급시 LTV 규제 도입 필요
- ③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 생활자금 수요 증가, 자산 시장 유입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규제 필요
- ④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감독: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대상 외 업권 (대부업자)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등 규제사각지대 발생 → 규제우회를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고액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제한
	내용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회사의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가계부채 안정화
- □ (규제수단) 저소득 차주 등의 가계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 일부 대출(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정책적 목적에 따른 대출, 자연재해 지원 대출 등)은 신규 취급시 DSR 적용을 제외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거시건전성 관리와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가 계부채 관리방안」('20.11.13일, '21.4.29일, '21.10.18일)의 후속조치로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당장은 일반 국민의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규제 대상 단계적 확대 등 다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약 (가계부채 안정 효과는 全 국민이 향유)
 -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사항 등을 마련 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 사항 등을 마련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o 규제 차등화 방안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원칙적으로 DSR 50% 이내 규제 적용
 -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나 서민금융
 상품 등 금융감독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DSR
 규제 배제하여 탄력적 적용소지 마련
- □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추가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취급 허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 실질적인 대출행위는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바, 추가적인 행정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 에 불과한 바, 추가 예산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방안임
 - 방안 발표 후에도 금융당국-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례별 상세 FAO 마련·배포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주요내용>

① '20년 11.13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관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 신용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② '21년 4.29방안

일 자	조치 내용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및 FAQ 배포 - 비주택담보대출 LTV 및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③ '21년 10.26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발표 및 FAQ 배포 - 가계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및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한도관리 강화
11.1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 개최 및 가계부채 관련 후속조치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 금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과도한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 하여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 관행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 **비주택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 우회 경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여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부 질권대출			
기본	2.규제조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3 제18호				
정보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6.21 ^	2022.06.30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20.11.' '21.4.29일, '21.10.26일)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추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가계부채 부실에 영줄 수 있는 대출지원은 제한하여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할 필요				택구입자 및 실에 영향을	
규제의 필요성	7.규제내용	출 수 있는 대출지원은 제한하여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할 필요 □ 차주단위DSR ○ 차주 단위 DSR(은행권 40%, 비은행권 50%) 규제 적용 대상을 누적 1억원 초과 가계대출을 보유한 가계 차주로 확대 ○ 주택 또는 비주택 매매계약금납부일이 '20.11.30일~'21.6.30일인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가계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R 적용 ○ 주택 또는 비주택 매매계약금납부일이 '21.7.1일~'22.6.30일인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계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R 적용 ○ 주택 또는 비주택 매매계약금납부일이 '22.1.3일~'22.6.30일인 누적 2억원 초과 가계대출을 보유한 가계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R 적용 □ 비주택당보대출 ○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비주담대를 받는 경우 LTV비율을 70% 이내로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담대를 받는경우 LTV비율을 40% 이내로 적용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실행일 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신 규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 대부업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 주하여 감독규정 적용				
	8 .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주 ¹ 가겨 금융 피규제자 담토 ^축	출 등 가계대출을 유 형 택관련 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고자 하음 용소비자 및 주택관련 보대출 등 가계대출음 대출 등 가계대출음	취급하는 금 - - - - - 일반국 ¹ 을	금융회 민원수 민 및	사 또는 규모 금융회사 임직원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부문멸한 가계내 환능력 범위 내 기				선제적 관리 및 상
			비용	편 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10.비 용 편익분석	정성분석				
규제의 적정성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11.영 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7	l 경쟁영향	향평가	중	기영향평가
	1 2 . 일 몰 설 정 여부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추진배경) 급등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발표
 - * '20.11.13일, '21.4.29일, '21.10.18일 :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 결정사항
 - 이에 따라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로 규정 변경이 필요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등
- □ (정부개입 필요성)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안정화시키고,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주요 규제 내용별 정부개입 필요성

- ① 가계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대상 확대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확장적 금융· 통화정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대두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대출 취급 관행 안착 노력 필요
- ②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LTV 규제 강화 :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담보종류별로 대출규제에 차등이 발생하여 규제사각지대·규제우회 문제 발생 →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 취급시 LTV 규제 도입 필요
- ③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 생활자금 수요 증가, 자산 시장 유입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 제한 규제 필요
- ④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감독: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대상 외 업권 (대부업자)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등 규제사각지대 발생 → 규제우회를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그레디니아	대안명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표시되다	내용	
그레데아	대안명	
ㅠ세네건2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회사의 주택·비주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자산시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가계부채 안정화
- □ (규제수단) 저소득 차주 등의 가계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 일부 대출(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정책적 목적에 따른 대출, 자연재해 지원 대출 등)은 신규 취급시 DSR 적용을 제외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거시건전성 관리와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가 계부채 관리방안」('20.11.13일, '21.4.29일, '21.10.18일)의 후속조치로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당장은 일반 국민의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규제 대상 단계적 확대 등 다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약 (가계부채 안정 효과는 全 국민이 향유)
 -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사항 등을 마련 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각종 경과조치^{*} 및 예외 사항 등을 마련하여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o 규제 차등화 방안

- □ 총 가계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원칙적으로 DSR 50% 이내 규제 적용
 -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나 서민금융
 상품 등 금융감독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DSR
 규제 배제하여 탄력적 적용소지 마련
- □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추가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취급 허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 실질적인 대출행위는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바, 추가적인 행정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 에 불과한 바, 추가 예산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방안임
 - 방안 발표 후에도 금융당국-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례별 상세 FAQ 마련·배포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주요내용>

① '20년 11.13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관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 신용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② '21년 4.29방안

일 자	조치 내용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및 FAQ 배포 - 비주택담보대출 LTV 및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③ '21년 10.26방안

일 자	조치 내용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발표 및 FAQ 배포 - 가계대출 차주 DSR 적용 확대 및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한도관리 강화
11.1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 개최 및 가계부채 관련 후속조치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 금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차입을 통한 **과도한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 하여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 관행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 **비주택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 우회 경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여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